

늘품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나.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·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.
- 다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계약목적

- 가.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나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나.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서 일까지 별지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- 다.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라.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[별표 1]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0.01.기준)

※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-202호(2015.11.25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름(매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상향된다.)

○ 재가급여 월 한도액(매년 상향됨.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1,498,300	1,331,800	1,272,300	1,173,200	1,007,20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	재가급여
일반		15%
기초수급자	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	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	6~9%
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	

○ (방문요양)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

분류	금액(원)
30분 이상	14,530
60분 이상	22,310
90분 이상	29,920
120분 이상	37,780
150분 이상	42,930
180분 이상	47,460
210분 이상	51,630
240분 이상	55,490
그 이상	연장검토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- 3)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4)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6)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7)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8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)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5)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5. 계약해제

가.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- 2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경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
- 4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- 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6)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
- 7)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

나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